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서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공동훈련센터” 라 한다)와 기업명 기재 (이하, “협약기업” 이라 한다)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이하 “지역·산업 맞춤 사업”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에 관한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간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의 역할) ① 공동훈련센터는 관련 법령 및 ‘지역·산업 맞춤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 한다.

1. 협약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분석,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수요반영,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2. 협약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한 채용예정자 과정 개발·운영 등 지원
 3.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에 대한 취업 지원
 4.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약기업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 훈련과정에 훈련생(근로자)를 참석토록 하여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채용예정자 과정 수료생의 취업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3조(훈련비용에 관한 약정) ①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협약기업은 공동훈련센터가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협약기업이 명시적인 해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협약서의 효력이 유효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본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약정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훈련센터는 지역·산업 맞춤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9조 제4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협약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만으로는 교육훈련실시가 어려운 경우
2.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제4조(성실의무) 공동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역·산업 맞춤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지역·산업 맞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산업 맞춤 사업 종료이전에도 협약기업이 2년간 연속하여 동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월 일 ← 교육 시행 이전일자로 필히 기재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기업명

주 소 : 대구 남구 명덕로 104

주 소 :

대표자 : 최 창 학 (인)

대표자 : 회사정보 기재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반드시 대표님 직인 원본
날인 부탁드립니다.

※ 첨부서류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현황 1부

(스캔/복사본 X)

【 첨부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지역 ·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본사)				
업 태		업 종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 명			HRD부서명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주소			홈페이지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숫자 '0'이 붙는 경우가 많으나, 완전 다른번호로 상이할 수 있사오니, 확인 후 기재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 기타 사항 】 없을 시 미기재				